

## 팔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
「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」 제6조(채용)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27일

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인원	직무내용	응시자격
팔달구보건소 결핵관리사업 (임상병리사)	1명	○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검사실업무 지원 -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업무 지원 - 가족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접촉자검진 업무 지원 - 검사실 업무 지원 - 기타 보건소 업무 지원	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

### 2. 근무조건 및 보수

가. 근무기간: 2026. 1. 2. ~ 2026. 6. 30.(6개월)

※ 근무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나. 근무적용: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

다. 임 금: 2026년 수원시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에 따라 지급 예정

- 노임단가: 97,250원/일(4대보험 적용)

※ 2025년 보건의료직종 노임단가, 2026년도 노임단가 확정시 추후 반영 예정

- 임금지급: 근무한 다음 달 5일 지급(상황에 따라 지급일 변경 가능)

라. 복무요일 및 근무시간: 주5일 09:00~18:00(8시간)

- 주휴 및 공휴일 수당은 각 근무 요일 기준에 맞춰 산정 지급

※ 복무요일은 차후 근로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,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
마. 기 타: 복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

「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」 등을 준용함

### 3. 응시자격

가.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

나. 「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」 제7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#### <결격사유>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-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다.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의거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

라.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

마.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의거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

### 4. 채용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: 응시요건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·경력 등 심사

※ 접수 기간 내 응시자에 한함

나. 2차 면접시험: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적격성 및 공직 마인드 심사
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
다.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: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으로 처리

## 5. 제출서류

- 가.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서식 1 참조)
- 나.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서식 2 참조)
- 다. 응시원서 1부(서식 3 참조)
- 라. 임상병리사면허증 사본 1부
- 마.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1부(해당자에 한함)
- 바. 아동학대, 노인학대,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  
(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)

## 6. 공고 · 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

- 가. 공고기간: 2025. 11. 27.(목) ~ 2025. 12. 5.(금)
- 나. 접수기간: 2025. 12. 1.(월) ~ 2025. 12. 5.(금)
- 다. 접수장소: 팔달구보건소 2층 병리검사실
- 라. 접수방법: 방문접수(우편, 전자우편 접수 불가)  
※ 평일 09:00~18:00[점심시간(12:00~13:00) 접수 불가]
- 마. 서류전형 발표: 2025. 12. 9.(화)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
## 7. 면접일시 및 장소

- 가. 면접일자: 2025. 12. 16.(화) 예정
- 나. 면접장소: 팔달구보건소  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

## 8. 최종 합격자 발표

- 가. 발표일자: 2025. 12. 17.(수) 예정(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)
- 나. 채용대상자 근무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: 2025. 12. 17.(수) ~ 2025. 12. 26.(금) 예정  
※ 면접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하며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 심사 결과 차순위자 선발 또는 재공고

## 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함
- 나.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

- 다. 응시원서 상 허위 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라.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- 마.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불가함
- 바.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사.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, 합격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음
- 아.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기간제노동자의 사용) 제1항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 제4조(노동자 채용 원칙) 제1항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함
- 자.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준용함
- 차.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『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함
  - 반환대상: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·자료·물건
  - 반환청구자: 응시자 본인(채용대상자 제외)
  - 반환청구기간: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
  - 반환청구방법: 청구기간(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) 내에 「채용 서류 반환청구서」 작성 후 팔달구보건소 병리검사실로 제출(서식 4 참조)
  - 반환이행기간: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
(병리검사실 ☎031-5191-05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【서식 1】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
##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
<필수항목>			
지원자 성명			
주소(현거주지)			
연락처	전화번호	전화	휴대전화
	전자우편		
주요 경력사항	회사명	담당 업무(직무내용)	근무기간(연, 월)
			년 월 ~ 년 월
			년 월 ~ 년 월
자격증 및 특기사항	관련 자격증		(   년   월 취득 )
			(   년   월 취득 )
취업지원 대상자 여부	보훈번호		
장애인 여부	장애종별	장애 정도	장애인 등록번호
저소득층 여부	구분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수급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보호대상자
	해당여부		

자기소개 등 활동사항	
----------------	--

※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증빙불가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)





【서식 4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필요시)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